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교흥의원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881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과징금의 용도에 자살예방기금에 대한 지원 추가	3

I. 개요

1.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88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등 115인
- (2) 제 안 일 : 2025. 9. 10.
- (3) 회 부 일 : 2025. 9.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10만 명당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 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2호의2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과징금의 용도에 자살예방기금에 대한 지원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880호)에서 설치하려는 자살예방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과징금) ① ~ ⑦ (생략)	제99조(과징금)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⑧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 예방기금의 지원</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6.1.1.

나. 검토의견

- **현행법**¹⁾은 요양기관이 속임수 등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속임수 등으로 행위·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 규정 재위반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감액 이후 다시 리베이트 금지 규정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1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①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요양급여에 관한 행위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 치료재료(이하 "행위·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대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건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동시에 해당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20년 542억 700만원, 2021년 468억 900만원, 2022년 581억 9,700만원, 2023년 542억 700만원, 2024년 567억 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각각 156억 7,700만원, 27억 9,800만원, 225억 9,500만원, 151억 1,600만원, 101억 6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2020	26,129	54,207	15,677	60.0	30.3	35,118
2021	26,129	46,809	2,798* (16,995)	10.7	6.0	43,977
2022	26,129	58,197	22,595	86.5	38.8	35,293
2023	26,129	54,207	15,116	57.9	27.9	39,091
2024	26,129	56,765	10,106	38.7	17.8	46,659

* 2021년 최초 수납액은 16,995백만원이었으나, 의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반환액 발생
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8항은 해당 과징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²⁾, 동법 시행령³⁾은 동법 제99조제1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65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해당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는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1.8명) 증가하여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이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에 비해 2.4배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⁴⁾.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할 때에는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1조(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①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65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

이에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880호,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규정하고자 함.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2880호,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
<u><신 설></u> <u><신 설></u>	<u>제4장의2 자살예방기금</u> <u>제19조의5(자살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국가의 출연금</u> <u>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u> <u>3. 기금의 운용 수익금</u> <u>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u> <u>5.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10</u> <u>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u> <u>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u>
<u><신 설></u>	<u>제19조의6(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u> <u>1.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사례관리 사업</u> <u>2.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의 개발 및 실행</u> <u>3.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 구축 및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u>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도 자살률 29.1명,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2025.9.25.

<신 설>	4.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지원 5. 자살예방 관련 민간단체 및 시민참여 기반 사업 지원 6.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예방 연구·개발 지원 7.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및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 관련 사업 지원 제19조의7(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또는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본 개정안은 이를 위하여 과징금의 용도에 자살예방기금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먼저, 과징금⁵⁾은 현재 65%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⁶⁾에 대한 지원에, 나머지 35%는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과징금의 용도에 자살예방기금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것임.

5)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말함.

6)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과징금의 65% 외에 복권기금 및 건강보험 분담금으로 구성됨.

- 그런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 집행액⁷⁾이 2021년 352억 3,800만원에서 2024년 1,602억 2,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비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비	45,943	45,870	66,625	61,204	102,292	102,022	160,610	160,224	142,363	집행 중	150,364

자료 : 보건복지부

- 아울러, 응급의료기금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2800) 프로그램 사업비는 2021년 2,359억 300만원에서 2024년 2,705억 2,0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 계획안에 따르면 4,621억 2,2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⁸⁾.

7) 일반회계(과징금), 복권기금, 건강보험 분담금으로 구성된 재원으로 집행되는 사업비를 말함.

8) 참고로, 응급의료기금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과징금 일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일부로 구성된 일반회계 전입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위원회의 결정으로 119구급대 특수 목적 음압 구급차 지원 목적의 기금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3. 정부의 출연금
-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 최근 5년간 응급의료기금 전체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총 계	392,567	574,962	685,827	786,447	640,061	494,960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2800)	235,903	281,481	249,925	270,520	312,271	462,122
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5100)	162	207	203	170	223	216
기금 간 거래(9200)	51,355	178,152	320,039	380,685	315,110	5,294
여유자금운용(9700)	105,147	115,123	115,660	135,242	12,680	27,544

자료 : 보건복지부

□ 또한, 본 개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88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878호)⁹⁾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들의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880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따른 자살예방기금의 수입이 매년 최소 3,500억원이 넘는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어 자살예방사업의 획기적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재원 각 항목과 규모, 기금의 사용용도 및 설치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⁰⁾.

9)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을 감안하여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임.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과징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기존 지원사업(응급의료기금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재난적의료비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원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최근 2년간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규모가 감소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 어려우며, 응급의료분야 투자를 강화 중인 상황으로 요양기관 과징금 지원 규모 감소 시 국정과제 추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차질이 예상됨. 또한,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은 매년 징수액 예측이 어렵고 일정하지 않으므로 자살예방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 자살예방이라는 정책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재정 마련을 위해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조성 마련을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반대함. 과징

10) 그 밖에 기획재정부는 자살예방기금의 목적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통해 기 지원 중이고,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별도 재원 없이 정부출연금, 복권수익금,보통세(주세), 건강보험 과징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요건을 미충족하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금의 재원 중 복권수익금과 관련하여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발행기관의 복권폐지를 전제로 수입금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신설 기금에 추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법정배분기관 추가는 현재 법정배분기관의 배분액 축소 문제를 야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금을 자살예방기금이라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본래 과징금 징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아울러 과징금을 자살예방이라는 특정 정책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익적 정책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더욱이 과징금은 불확정적·변동적 수입이므로 자살예방과 같이 장기적·지속적 예산 투입이 필요한 정책사업의 안정적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